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자치군산”의 비전 아래

“시민주도의 따뜻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진사업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공동체 지원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아카데미
-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 사회혁신 리빙랩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컨설팅 지원
판로 지원
홍보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협업화 지원
- 공공구매 박람회
- 설 명절 가치드림 장터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 사회적경제 소식지 발간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협의회 구축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경제 한마당
- 사회적경제기업 업종별 협의회 구축 지원
- 사회적경제 활동가 워크숍 및 네트워킹데이



☺ 군산시 중정길 8-1
☎ 063. 443. 5437
🌐 gunsansec.or.kr
✉ gsec20205@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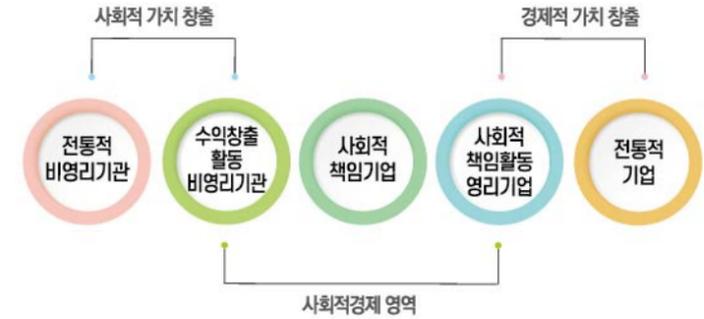
연대와 협동으로
같이 세 가치를 더하다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 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사회적 경제 특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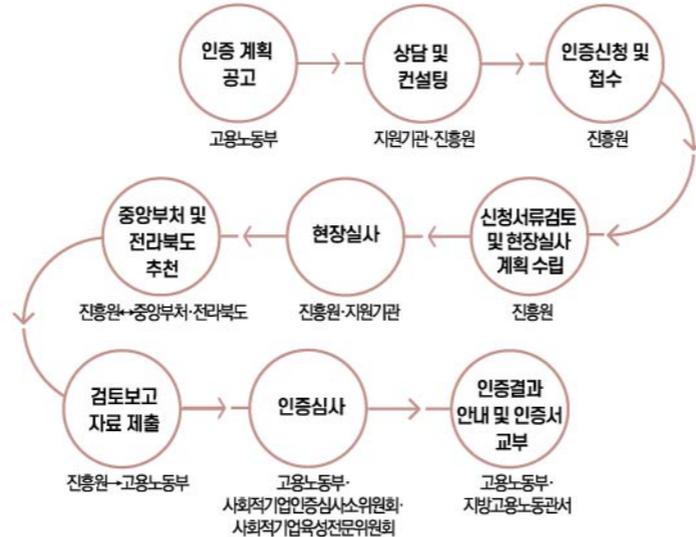
예비사회적기업은 제도 목적상 지정 기간 3년 내에 미흡한 인증요건 등 보완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은 선택사항, 미전환 불이익 없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기준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조직 형태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유급 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해당없음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의 의사결정구조 필요
해당없음	수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규약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배분 가능한 이윤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이윤의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부처형」- 소관부처장 「지역형」- 전라북도지사	인·지정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의 여러 모습들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 (인적·물적자원 활용/사회문제 해결/사회적 목적 추구)
기타형	도시재생, 친환경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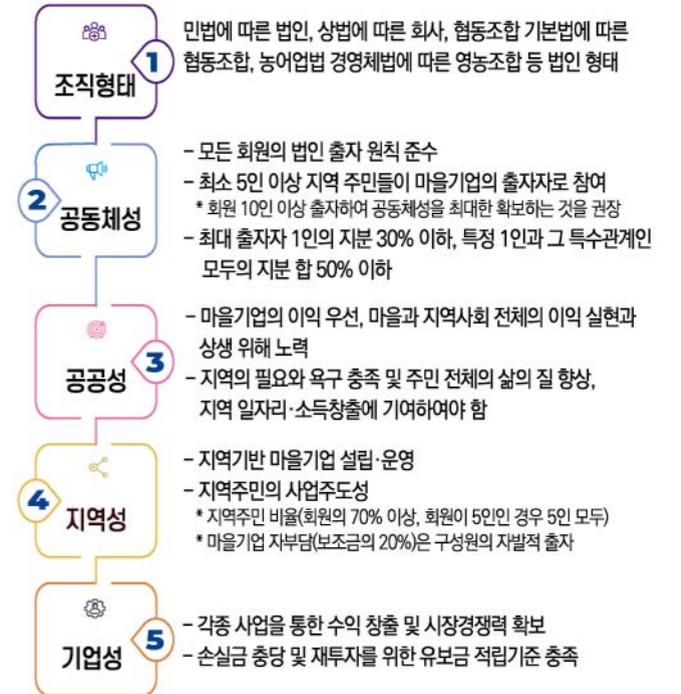
* 지원기관: (사)전북사회적경제지원대회의
* 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7대 원칙

-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 자율과 독립
-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군산시장에게 신고를 거쳐 설립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거쳐 설립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②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②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③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5인 이상 포함 ※ 보건의료: 500인 이상)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⑤ 창립총회 개최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⑤ 창립총회 개최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군산시장)	⑥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⑦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군산시장→발기인)	⑦ 설립인가증 발급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부처→발기인)
⑧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⑧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⑨ 출자금 납입
⑩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⑩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⑪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⑪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지정절차

